UNIST 감사 초빙 공고

UNIST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직무를 수행할 상임감사를 다음과 같이 초빙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2009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발하여 2015년 과기원으로 전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국가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 응모자격

□ UNIST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식견과 청렴성 및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신 분

□ UNIST 정관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신 분

UNIST 정관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출마감,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마감 : 2026. 11. 25.(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 제출 가능

□ 제 출 처 : (우)449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대학본부(201동) 기획팀(406호)

3.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첨부' 의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A4 5매 이내, 자유양식)

□ 감사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자유양식)

□ 지원자 사전 질문서 1부('첨부' 의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 의 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 및 경력증명서(주요경력) 각 1부

4. 기타사항

□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반드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연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UNIST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052-217-1145 (Homepage) www.unist.ac.kr

(E-mail) unistboard@unist.ac.kr

UNIST 이사장